



정기(기동점검) 점검 조치결과보고

〔남산예정자락 재생사업(공원 및 주차장)〕

□ 점검일시 : 2019.02.18 (월)

□ 조치결과

◆ 점검자 : 정달영, 정진혁, 최영준

지적내용	점검사진	조치일자	조치사진
		조치내용	
<p>○ 추락재해 예방</p> <p>- 우수박스 종점부 작업장 진입구간 주변 추락 우려 구간에 안전시설이 미설치되어 있어, 작업자 이동 및 작업중에 추락재해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 조치하기 바람.</p> <p>- 또한, 종점부 주변 교통방송 지하층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는 안전난간은 관련 규정에 맞도록 보완을 실시하기 바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p>		<p>2019.02.18</p> <p>1. 우수박스 종점부 작업장 진입구간 주변 추락 우려 구간에 안전난간대 설치하여 근로자 이동시 추락 예방</p> <p>2. 교통방송국 상부 안전난간대 보수하여 추락 예방</p>	

<p>○ 가설통로 안전</p> <p>- 보도육교 강교작업장에는 도장작업이 예정되어 있어 근로자가 수시로 오르내릴 수 있는 계단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기 바람.</p> <p>- 작업장 상부에는 안전난간 기둥만 설치된 상태로 작업간에 근로자 추락 및 전도 재해가 우려되니 조치하기 바람.</p> <p>※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통로의 설치)</p>		<p>2019.02.18</p> <p>1. 보도육교 작업장에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계단통로 설치 2. 작업장 상부 안전로프 설치하여 근로자 추락 및 전도 예방</p>	
<p>○ 추락재해 예방</p> <p>- 소방재난본부 주변 우수박스 시점부 및 교통방송 지하층 주변 작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추락 및 전도 방지 안전시설물은 설치가 미흡하여 근로자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보완을 실시하기 바람.</p> <p>※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p>		<p>2019.02.18</p> <p>1. 소방재난본부 주변 우수박스 시점부 및 교통방송 지하층 주변 작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추락 및 전도 방지 안전시설물 PE드럼에서 PE방호벽으로 보완 교체하여 근로자 추락 사고 예방</p>	
<p>○ 전도재해 예방</p> <p>- 강교를 거치한 받침목이 각목을 사용하였거나 다단으로 불안정하게 쌓아올려 전도재해의 위험이 있는 상태로 작업하고 있으므로 거치전 계획 및 현장상태를 관리 감독 요함.</p> <p>※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p>		<p>2019.02.18</p> <p>1. 강교를 거치한 받침목을 외줄쌓기에서 좌우로 3줄이상 쌓고 상하 교차 배열하여 안정적인 상태로 받쳐 전도 예방</p>	

<p>○ 전도재해 예방</p> <p>- 작업장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 맨홀(개구부)에는 덮개가 덮여져 있으나, 고정되지 않은 상태로 근로자 이동 또는 외부 하중으로 인하여 뒤집어지거나 미끄러질 우려가 있으니 견고한 상태로 고정하거나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근로자 추락 및 전도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하기 바람.</p> <p>※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조치)</p>		<p>2019.02.20</p> <p>1. 개구부 덮개보다 큰 맨홀은 토류판을 덮어 고정하고 개구부 덮개를 추가로 설치하여 근로자 추락 방지</p> <p>2. 근로자 이동 또는 외부 하중으로 인하여 뒤집어지거나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덮개 고정</p>	
<p>○ 흙막이가시설 안전</p> <p>- 우수박스 암파기 작업장 가시설 일부 구간에 스티프너가 누락된 구간이 있으니 확인을 실시하고 보완하기 바람.</p> <p>※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붕괴 등의 위험방지)</p>		<p>2019.02.21</p> <p>1. 우수박스 암파기 작업장 가시설 일부 구간 누락된 스티프너 설치</p>	

<p>○ 기계기구 안전</p> <p>- 커팅기 등 작업장에 반입되는 모든 위험기계 기구류는 반입전 및 정기검사(매월)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기 또는 부착하여 관리하기 바람.</p> <p>- 커팅기 회전축이 노출된 상태로 작업시 근로자 협착 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보호커버를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p> <p>※ 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028(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p>		<p>2019.02.18</p> <p>1. 커팅기 작업전 점검 및 점검표 부착 2. 커팅기는 기성품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며, 노출된 회전축은 작업시 커팅기의 전후이동을 위한 것으로 고속회전하지 않음</p>	 
<p>○ 감전재해 예방</p> <p>- 강교 작업장 주변에 비치되어 있는 용접기의 충전부 방호가 미흡하여 감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보완하기 바람.</p> <p>※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p>		<p>2019.02.18</p> <p>1. 강교 작업장 주변에 비치되어 있는 용접기의 충전부 덮개 내리고 사용</p>	
<p>○ 감전재해 예방</p> <p>- 발전기에 비치된 가설 전선 접지선이 단락되었으니 가설전선 사용전 접지선이 있는 것으로 교체 후 작업 요함.</p> <p>※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17(가설전선)</p>		<p>2019.02.18</p> <p>1. 발전기에 비치된 가설 전선 접지선이 있는 것으로 교체하고 야외용 커버 설치 후 작업</p>	

<p>○ 사면 안전</p> <p>- 우수박스 시점부 작업장 주변에는 기존 박스 구조물에서 유입되는 하수를 주름관을 이용하여 하부로 물돌리기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상부 구간 연결부위 조치가 육안상 미흡하고 하부 구간은 청탐지를 사용하여 물의 흐름을 유도하고 있어 누수 등으로 인한 작업장 내 지반 침하가 우려되니, 확인을 실시하고 필요시 보완을 실시하기 바람.</p> <p>※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0조(지반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p>		<p>2019.02.18</p> <p>1. 현재 우수박스 시점부 하부에 있는 기존관은 계에 미반영되어 있고, 수정 타설 후 양생충로 양생 후 거푸집 해체하고 주변부 토공정리를 하면서 상하부 기존관을 접속에 인입 예정(2월28일까지)</p>	
<p>○ 건설기계 안전</p> <p>- 점검시 굴삭기가 엔진점검용 보호커버를 열어 젖힌 상태로 이동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연결 교량 구조물과 충돌우려가 있었으니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p> <p>- 건설기계 작업시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을 유도하기 바람.</p> <p>※ 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029(건설기계)</p>		<p>2019.02.18</p> <p>1. 굴삭기 엔진점검용 보호커버 잠금 2. 굴삭기 작업시 신호수 배치 3. 굴삭기 장비조종원 안전교육 실시</p>	

<p>○ 화재/폭발/질식 재해 예방</p> <p>- 위험물 저장소 외부에는 소화기를 배치하고 관리하기 바람.</p> <p>※ 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 ? 024(위험물보관소)</p>		<p>2019.02.18</p> <p>1. 위험물 저장소 외부에 소화기 배치</p>	
<p>○ 화재/폭발/질식 재해 예방</p> <p>- 가스용접기의 가스용기를 위험물보관소에서 직접 사용할 경우 폭발 시 연쇄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중인 가스용기는 전용대차를 이용하고 나머지만 위험물보관소에 적치될 수 있도록 관련 작업자 재발방지 교육요망</p> <p>※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p>		<p>2019.02.20</p> <p>1. 사용중인 가스용기는 전용대차를 이용하고 나머지는 위험물보관소에 보관</p> <p>2. 작업자 재발방지 교육</p>	
<p>○ 품질관리</p> <p>- 현장 용접 및 도장이 진행중인 강교의 특별시방서 없이 시공을 하고 있으므로 시방서를 제출받아 시방서에 준한 시공이 될수 있도록 관리 요하며,</p> <p>- 용접으로 인한 용융등 단면손상부 등이 있으니 조치 요함.</p>		<p>2019.02.20</p> <p>1. 특별시방서를 제출받아 기준 준수</p> <p>2. 단면손상부 보수 후 감리 확인 완료</p>	

○ 품질관리

- 아직 현장 도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강교거치가 곧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도장 후 도장이 벗겨지지 않는 양생시기를 지난 후 거치 작업 요함.



2019.02.20

1. 도장작업 검측 후 도장이 벗겨지지 않는 양생시기(시방기준 12시간 이상)를 지난 후 익일 오후 거치

